

「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8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9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3년 9월 11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행정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한적십자봉사회의 사업지원 근거 규정과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여, 공익활동에 이바지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사기 진작과 단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지원근거 법령 명시(안 제3조):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 제22조
- 2) 사업지원 근거 명확화 (안 제3조)
  - 가) 재난구호 활동 → 재난대비 및 구호에 관한 활동 및 홍보사업
  - 나) 사회봉사 활동 →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
  - 다) 보건의료·안전교육 활동 → 보건의료·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

- 라)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(신설)
  - 마) 조직사무소 및 물품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 (신설)
  - 바) 우수 회원의 선진지 견학 (신설)
  - 사)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·체육 행사 지원 (신설)
- 3) 포상 규정 구체화 (안 제5조): 포상 근거 조례 명시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- 본 조례안은  
대한적십자봉사회 사업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,  
지원사업을 확대하였고,  
군의 포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포상 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,
- 지역 내 공익활동에 이바지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 
의 사기 진작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- 검토 결과,  
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